

특약 개정 대비표

- 약관명: 「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」 특약
- 변경 시행일: 2024년 08월 14일 (수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적용
- 주요 변경 내용: 가입대상 추가 (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등)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적용범위 <생략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 1.~13. <생략> <u><신설></u></p> <p>제3조 예금과목~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<생략></p> <p><부칙> 1~16 <생략> 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 적용범위 <좌동></p> 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 1.~13. <좌동> <u>14.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</u> <u>15. 「고용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</u> <u>16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</u> <u>1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</u> <u>18. 「임금채권보장법」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</u> <u>19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</u></p> <p>제3조 예금과목~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<좌동></p> <p><부칙> 1~16 <좌동> 17. 이 특약은 2024년 08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.</p>	<p>가입 대상 추가</p> <p>부칙 추가</p>